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5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위탁 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의 거리상담, 조기발견·구조, 청소년쉼터와 연계 보호활동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 활동지역: 서울 한강 이남 지역

- 시설규모 : 45인승 대형버스, 25인승 중형버스
 - 상담부스2, 활동부스1, 집단상담부스1, 대기부스1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정원 24명)
- 보호기간 :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 ※ 위치도 (활동지역)

요일	지역	운영시간	운영장소
화요일	잠실새내역	14:00 ~ 18:00	맥도날드 잠실새내역
수요일	신정네거리역	16:00 ~ 23:00	신정네거리역 119 안전센터 앞
목요일	신림역	16:00 ~ 23:00	신림역(봉림교 인근)
금요일	천호역	16:00 ~ 23:00	천호 로데오
토요일	삼아&축제		



더(THÉ)작은별(동북권) - 25인승버스

요일	운영시간	지역	운영장소
화	14:00~18:00	강동구	고덕 영일 이마트 앞
수	15:00~22:00	강서구	화곡 냇골어린이공원
목	15:00~22:00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금	15:00~22:00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토	11:00~18:00	한강이남	지역축제



- 5) 위탁기간 : 3년 (2020.01.01 ~ 2022.12.31)
- 6)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7) 소요예산 : 821,633천원
 - 인건비 503,681천원, 사업비 215,140천원, 운영비 102,812천원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에서 운영하는 동북·동남청소년이동쉼터는 위탁기간 (2018.1.1.-2019.12.31.) 만료 및 의회의 동의(2013.7.12.) 후 6년이 경과 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3년, 2020. 1. 1. ~ 2022.12.31.) 하려는 것임.

※ 동북·동남청소년이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북/서남이동쉼터와 같이 조례에 명시된 시설명(「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 (별표1))에 따라 두 개의 시설을 1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북청소년이동쉼터와 동남청소년이동쉼터를 통합하여 1개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음.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운영
- 시설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 활동지역: 서울 한강 이남 지역
- 시설규모 : 45인승 대형버스, 25인승 중형버스
- 상담부스2, 활동부스1, 집단상담부스1, 대기부스1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화·노숙 청소년(정원 24명)
- 보호기간 :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 위탁기간 : 3년 (2020.01.01 ~ 2022.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821,633천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동북이동쉼터는 25인승 버스로, 동남이동쉼터는 45인승 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북/서남이동쉼터와 같은 사업(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간식제공, 응급처치, 교육 및 정보제공, 피복 생필품 긴급지원,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 동북 청소년이동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 2015.01.01.~2017.12.31. : (사) 인터넷꿈희망터 / 재위탁
- 2018.01.01.~2019.12.31. : (사) 인터넷꿈희망터 / 재계약

〈 시립 동남 청소년이동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 2013.10.30.~2014.12.31. : (사) 인터넷꿈희망터 / 위탁 공개모집
- 2015.01.01.~2017.12.31. : (사) 인터넷꿈희망터 / 재위탁 공개모집
- 2018.01.01.~2019.12.31. : (사) 인터넷꿈희망터 / 재계약

- 동북청소년이동쉼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회의 종합성과평가²⁾ 및 지도·점검이 있었으며, 인사(부장직제 부재, 청소년상담사 부재, 채용공고일 미준수, 채용서류 미흡, 채용후 성범죄 경력 조회,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공개채용원칙 미준수, 후순위자 채용 시 기준 미비,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미준수), 회계(신용카드 관리 미흡, 수당증빙자료 미흡, 재정보증보험 시설장 미가입, 업무추진비 품의서 부재,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초과 지출, 예산 및 결산 공고 미실시), 재산관리(차량을 시설명의로 아닌 법인명의로 등록함) 분야에서 다수 지적 사항이 있었음.

〈 최근 3년간 시립동북청소년이동쉼터 지적사항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에 근거하여 소장 하에 부장을 두도록 되어있으나 부재함
-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배치기준을 미준수함

2) 2016년 서울시 지도·점검(2016.9.30.), 2017년 서울시 지도·점검(2017.7.21.), 2017년 서울시 종합성과평가(2017.3.08.~06.23.), 2018년 서울시 지도·점검(2018.5.29.), 2019년 서울시 종합성과평가(2019.4.23.~04.25.)

-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배치기준을 미준수함
- 종사자 공개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 누락
-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미준수
- 성범죄경력조회 기간 미준수
- 정근수당 가산금 과다지급
- 신용카드 관리 미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초과 지출
- 예산 및 결산 공고 미실시
- 위·수탁 협약서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 후 생등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내 해당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017년 홍보계획에 전년도 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발전방향의 제시는 미흡

○ 동남청소년이동쉼터는 5회의 평가 및 지도·점검에서 운영(쉼터 조직관련 규정 미준수), 인사(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기간 미준수, 채용시 필수 구비서류 누락,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미준수, 신규채용 규정 보완 필요), 회계(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예산 및 결산 공고 미실시), 재산관리(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분야에 동북청소년이동쉼터와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음.

〈 최근 3년간 시립동남청소년이동쉼터 지적사항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1 기보 조직모형 미준수
-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배치기준을 미준수함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기간 미준수
- 종사자 채용시 필수 구비서류 누락
-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미준수
- 인사규정 내 임용(신규채용) 규정 미흡
- 신용카드 사용관련 규정 미준수
-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 예산 및 결산 공고 미실시
-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 사업계획서 내 근로조건 미포함
- 연도별/중장기 사업 목표, 대상, 진행절차, 추진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동쉼터를 이용하고 난 후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지로 불편사항을 접수 받으며 고충 내용에 따라 바로 대응 하거나 분기로 요구사항에 응대하나 불편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결과 확인이 어려움
- 이동쉼터를 이용하고 난 후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지로 불편사항을 접수 받으며 고충 내용에 따라 바로 대응 하거나 분기로 요구사항에 응대하나 불편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결과 확인이 미흡함

○ 이동쉼터를 총괄하여 살펴보면,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부장직제의 부재, 인사채용, 물품대장 관리 문제 등이 있음.

모든 이동쉼터는 부장의 직제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4개소 모두 부장직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는 인력부족으로 부장의 인건비로 2명의 인력을 운영한 것으로 설명³⁾하고 있으며, 이는 20년에 가까운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조직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2019. 05. 9(목) 서남이동쉼터 운영관련 자료수집 및 현장면담(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 청소년쉼터의 조직 모형 〉

현행 청소년쉼터의 조직모형	2001년 시행규칙 제정당시의 조직모형
<pre> graph TD A[④청소년쉼터] --> B[시설장] B --> C[부장] C --> D[업무지원팀] C --> E[교육문화팀] C --> F[상담팀] </pre>	<pre> graph TD A[청소년쉼터] --> B[시설장] B --> C[부장] C --> D[업무지원팀] C --> E[교육문화팀] C --> F[상담팀] </pre>

출처: [서울특별시규칙 제3161호, 2001.1.15., 제정]「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
 [서울특별시규칙 제4103호, 2016.6.30., 일부개정]「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1]

- 특히, 일시쉼터의 정원은 6명이며, 비정규직 2명을 추가 운영하여 총 8명의 이동쉼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는 3개팀(업무지원팀, 교육문화팀, 상담팀)을 운영토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조직모형이 현실을 효과적으로 분석한 모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이동쉼터는 오후(15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위기청소년들이 많은 곳에서 3~4명(운전자1명, 상담자 3명)을 1팀으로 하여 상담 또는 긴급구조 등 야간근무를 하고 있음.
- 교대근무의 형식을 띄지만, 휴가자 또는 건강이상 등의 결근이 있을 시 대체 인력 없이 근무를 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한 상담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업무 수행 행태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는 정밀성의 결여로 연결되어 각종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위기청소년의 조기개입은 신뢰를 기반한 상담에서 출발하며, 신뢰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이 고민을 들어준다’는 일관성(또는 항상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⁴⁾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⁵⁾하나, 열악한 근무조건 및 낮은 임금으로 서울시 시설에서 경력을 쌓고, 타지역의 유사·동종 시설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가출 및 위기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쉼터 종사자 장기 재직 여건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또한 이동쉼터는 권역별 명칭과는 다른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어, 명칭을 조정하거나, 경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각 이동쉼터의 이동경로 〉

쉼터명	일자별 방문지역
서북이동쉼터	종로구 인사동, 서대문구 신촌, 중랑구 동부시장, 노원구 노원역
서남이동쉼터	성북구 성신여대, 동대문구 회기, 연평구 연신내, 강북구 수유역
동북이동쉼터	송파구 잠실새내역, 양천구 신정동, 관악구 신림동, 강동구 천호로데오
동남이동쉼터	강동구 명일이마트, 강서구 화곡동,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영등포구 영등포 공원

- 모든 쉼터(일시, 단기, 중장기)에게 기관연계를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일시쉼터의 경우는 기관연계와 더불어 지역 자원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악구의 경우 여러 개인·사회봉사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식당 또는 야간식당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우선 충족시키고 있어, 이동쉼터의 경우 이동성이라는 특징과 함께 지역 내 이동이라는 고정성도 가져야 지역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서울시 청소년이동쉼터 종사자 전문위원 인터뷰

5) 이동버스는 같은 요일 같은 장소를 찾아가고 있음

- 현재 명칭과 연관없는 이동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동쉼터를 권역별 이동 쉼터로 기능과 위치를 재조정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역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 이동쉼터의 규모 및 인력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악구의 지역연계 무료식당 운영 현황 >

장소	기관명 및 심야식당 이름	기간
신림역 주변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런닝폴’	2,4주 목요일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매주 금요일
	‘청소년 심야식당 늘품’	매주 월요일
	서울시립청소년일시쉼터 ‘작은별’	매주 목요일
	브릿지칼라 ‘청소년 심야음악식당’ 후원 :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1,3주 화요일
주거지역	(사)관악주민연대 ‘그냥’ 후원 :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1,3주 목요일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봉천지역 청소년배움터’ 후원 :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2,4주 금요일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봉천지역 청소년놀이터’ 후원 :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1,3주 금요일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꾸는아이들의 학교 ‘밥먹고 놀래’	매주 수요일
	관악구자원봉사센터 ‘마마식당’	매주 화요일

- 이동쉼터의 경우 민간위탁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살펴본 ① 현실을 반영한 조직 및 직제 개편, ② 인원 충원, ③ 현실적 인건비 책정, ④ 이동쉼터별 권역 조정, ⑤ 지역자원 연계 등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한 후 재위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25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의 거리상담, 조기발견·구조, 청소년쉼터와 연계보호활동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 활동지역: 서울 한강 이남 지역
- 시설규모 : 45인승 대형버스, 25인승 중형버스
 - 상담부스2, 활동부스1, 집단상담부스1, 대기부스1
- 이용대상 :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정원 24명)
- 보호기간 : 24시간 이내 일시보호


○ 위치도 (활동지역)

요일	지역	운영시간	운영장소
화요일	잠실새내역	14:00 ~ 18:00	맥도날드 잠실새내역
수요일	신정네거리역	16:00 ~ 23:00	신정네거리역 119 안전센터 앞
목요일	신림역	16:00 ~ 23:00	신림역(봉림교 인근)
금요일	천호역	16:00 ~ 23:00	천호 로데오
토요일	삼아&축제		



더(THE)작은별(동북권) - 25인승버스

요일	운영시간	지역	운영장소
화	14:00~18:00	김동구	고덕 명일 이마트 앞
수	15:00~22:00	강서구	화곡 빗길어린이공원
목	15:00~22:00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금	15:00~22:00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토	11:00~18:00	한강이남	지역축제



마. 위탁기간 : 3년 (2020.01.01 ~ 2022.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821,633천원

- 인건비 503,681천원, 사업비 215,140천원, 운영비 102,812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 (☎2133-4128)